

기간제근로자(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21년도 제9회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0. 2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구분	근무예정지	선발직종	선발예정인원
기간제근로자 (휴직 대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보조원	1명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각 부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2. 신분사항 및 근로조건

- 기간제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
- 계약기간
 -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 채용일로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공무직 전환 불가)
- ※ 원 근로자의 복직 시기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급여수준(2021년 기준)

- (사무보조원) 월 고정급 2,016,000원(세전)

○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소속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

○ 근로시간

- (사무보조원): **【통상근무】**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1h)>

3. 응시대상 및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준용

○ 학력 및 성별

- (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 학력 및 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 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우대
 - ※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하며,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법률)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모집분야별 우대사항

분야	사무보조원
우대사항	• 항공사, 비자업무 등 출입국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어학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동능력 등 정보화 능력

4. 채용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여부에 따라 합격을 결정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의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 (사무보조원)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항공사, 비자업무 등 출입국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이상 근무경력자 등)
- 어학자격증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인정기준 : 영어 TOEIC 700점이상, 중국어 신 HSK 5급 150점이상 으로 다른 언어도 이에 준해서 인정함
- 정보화 능력 : 정보화관련 기능사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평정 성적 최우수자 순으로 선발, 계약체결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채용공고	'21. 10. 21.(목) ~ 10. 27.(수)	나라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응시원서접수	'21. 10. 26.(화) ~ 10. 27.(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1. 11. 2.(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면접시험(예정)	'21. 11. 8.(월)	장소 : 소회의실(7층) 시간 : 14:00 ~ 17:00 예정 (응시 인원에 따라 유동적)

최종 합격자 발표	'21. 11. 9.(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신규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후보자 등록 완료 '21. 11. 10.(수) ~ '21. 11. 12.(금)	근무개시(예정) 【 '21.11.15.(월)】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총무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21. 10. 27.(수) 18:00 까지)

※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채용공고 사이트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 서식 제1호)
-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또는 임의양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5호)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6호)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별지 서식 제7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이 반드시 포함)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본인)

-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출입국관련 업무 근무경력 등 경력증명서

-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 어학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경력증명서(경력사실 확인이 가능 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1부(본인기준,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반명합판 3.5cmX4.5cm) 2매
- 통장사본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요건 부적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담당자 : 최구현 ☎ 02-2650-6221)으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서식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사무보조원(휴직 대체)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 ☐ 미제출
⑨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성명 : (서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1년 제9회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본인(휴대전화)		가족(휴대전화)	

응 시 표

2021년 제9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1 년 월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 휴직 대체)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 현 주소지(주민등록)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재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

이 력 서

1. 인적사항				
성 명		응시분야		
생일생일	※ 생년기재 불요 월 일	나 이	만	세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사항 없음			
주 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보훈대상(국가유공자 등)			

2. 경력사항

근무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		
	~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 (서명)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분야	
----	--	------	--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2021. . . 작 성 자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당해 경쟁채용시험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메일,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1년도 제9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1. . .

성명 : (서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1년도 제9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 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 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1년 2월 1일

성명 : (서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